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75 발의연월일: 2024. 12. 13.

발 의 자:문정복・한창민・김한규

김준혁 · 김문수 · 김재원

김영배 • 박홍배 • 김영호

강준현 • 진선미 • 김태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국회 출입이 통제됐으며, 무장 계엄군이 국회의 시설을 파괴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기 위해 국회 본청에 진입하는 등 내란 사태가 발발함.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계엄의 해제를 결정했음에도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하지 아니하고 국무회의를 지연 개최하여 계엄 상황을 지속 하는 등 현행법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사실이 확인됨.

이에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계엄을 해제하면 자동으로 계엄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또한 위헌·불법 상황을 조기에 종식하고 국민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헌법」에서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열 거하고 있는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과 사회적으로 주요 직위에 있는 교육감·「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총장 등으로 하여금 선포된 계엄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표명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안과 비상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내란으로 판명된 계엄에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계엄 선포에 대한 의견 표명 의무) ① 위헌·불법 계엄 시 국민의 불안을 신속하게 안정시키기 위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 원·감사원장·감사위원 및 교육감·「고등교육법」의 대학 총장은 선포된 계엄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체 없이 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여야 하는 법관의 직위 및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시간부로 계엄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조의2(계엄 선포에 대한 의견
				표명 의무) ① 위헌·불법 계
				엄 시 국민의 불안을 신속하게
				<u>안정시키기 위하여 국무총리·</u>
				<u>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u>
				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
				<u>장·감사위원 및 교육감·「고</u>
				등교육법」의 대학 총장은 선
				포된 계엄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어
				떠한 방식으로든 지체 없이 표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
				하여야 하는 법관의 직위 및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u>정한다.</u>
제11조(계엄의	해제)	1 ~	3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 ③
(생략)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④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
				한 경우에는 그 시간부로 계엄
				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